



제43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피해자 대상 사건통지 강화 등 〉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822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피해자 등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 중간통지 규정 신설 (안 제245조의11 신설)	2
2. 피해자 등에 대한 공판 관련 통지 강화(안 제259조의2)	9
3. 피해자 변호사 제도 도입(안 제259조의3 신설)	1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6. 13.
3. 회 부 일 : 2025. 6.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경우 직접 고소·고발한 사건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신청을 한 경우에만 공소제기나 재판 결과, 피고인 구금 사실 등을 통지받을 수 있어 사건 당사자임에도 해당 형사사건의 실체적 내용이나 절차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측에게 사건의 주요 처분 및 진행에 관하여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측이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통지 의무를 면하도록 하며, 피해자도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사건의 중요 관계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45조의11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피해자 등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 중간통지 규정 신설 (안 제245조의11 신설)

개정안은 검사·사법경찰관이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에게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사건접수·이송 시, 사건접수 후 매 1개월 경과 시, 사건의 사건송치 시, 3개월 내 수사 미완료 또는 공소제기 미결정 시,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 요청 시 7일 이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u>제245조의11(사건에 대한 중간통지)</u> <u>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통지대상자”라 한다)에게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대상자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u>

통지하여야 한다.

1. 사건을 접수하거나 타 기관으로 이송하였을 때

2. 사건 접수 후 매 1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3.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을 때

4. 검사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때

가.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거나 타 기관에서 이송받은 사건을 접수한 날

나.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 또는 재항고 이후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수사가 재개된 날

5.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제197조의2에 따른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제245조의8에 따른 재수사를 요청한 때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경우에는 통지대상자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충실히 설명하여야 한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지대상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

	<u>니하는 경우</u> 2. <u>고소 또는 고발이 취소된 경우</u> 3. <u>수사 또는 재판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u> 4. <u>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u> 5. <u>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u> ④ <u>제1항에 따른 통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에 관하여는 현행법상 명시적 규정이 없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¹⁾(이른바 “수사준칙”)에 수사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음.

그에 따라 현재 수사 진행상황 통지 관련 구체적 사항은 기관마다 별도 규정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바, 경찰수사 단계에서의 통지는 「경찰수사규칙」(행정안전부령)²⁾ 및 「범죄수사규칙」(경찰청훈령)³⁾에, 검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대한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은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2) 「경찰수사규칙」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

찰수사 단계에서의 통지는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대검찰청예규)⁴⁾에 관련 내용이 각각 규정되어 있음.

해야 한다. 다만,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2.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3. 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사 진행상황 통지 후에 고소인등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사법경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고소인등이 요청(동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전자기록사건(「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전자기록사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산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서
 2. 전자기록사건이 아닌 사건(이하 “종이기록사건”이라 한다)에서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서의 사본
 3. 서면 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 이외의 방법으로 통지한 경우: 해당 통지의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
- ⑤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고소인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2.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3.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4.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3) 「범죄수사규칙」 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피의자가 법정대리인등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에게 통지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 그와 신뢰관계 있는 사람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법정대리인등에게 통지를 하는 것이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5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거나 피해자(13세 이상인 미성년자에 한정한다)의 피해진술 거부 등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법정대리인등에게 통지하지 않을 때에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상담소 등 그 밖에 관련 법률에 따른 피해자 지원기관 또는 피해자의 변호사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피해장애인
5.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자

[현행 법령상 수사 진행상황 통지 규정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경찰 단계 (경찰수사규칙 등)	※ 통지대상 고소인등(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 ※ 통지사유(시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 ①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 ② 위 ①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③ 위 ②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 통지예외 사유 ① 고소인등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② 고소인등에게 통지해야 하는 수사 진행상황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 ③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④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검찰 단계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 통지대상 고소·고발인 또는 피고소·고발인 ※ 통지사유(시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후 7일 이내) ① 직접 수리한 사건을 사경 등에게 수사지휘하는 경우 ② 송치받은 사건을 사경 등에게 보완수사지휘하는 경우 ③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①의 사건이 3개월 이내에 송치되지 않는 경우, ②의 사건이 3개월 이내에 재송치되지 않은 경우 ※ 통지예외 사유 ① 통지대상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② 통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이미 고지한 경우 ③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이처럼 수사 진행상황 통지에 관한 규정이 각 수사기관별 규칙·지침 등에 산재해 있다 보니, 수사기관마다 통지주거나 방법 및 재량사항 여부 등이 각각 다른 상황이고, 그 내용이 법률이 아니라 여러 하위법령

4)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고발사건에 관하여 고소·고발인 또는 피고소·고발인에게 수사의 진행과정을 통지(이하 "중간통지"라고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에 규정되어 사건관계인이 수사 진행상황 통지 관련 사항을 쉽게 알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음.

또한, 검찰수사 단계에서의 통지는 현행 지침상 그 대상이 ‘고소·고발인’ 및 ‘피고소·고발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고소·고발한 사건이 아닌 사건의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 등은 수사 진행상황 통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한계도 있음.

이에 개정안은 하위법령에 각각 규정된 수사 진행상황 통지 관련 내용을 통합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고소·고발인이 아닌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 등도 그 통지대상에 포함됨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알 권리’ 등 보장을 더욱 강화한다는 입법취지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봄.

다만, 개정안에 따른 통지대상, 통지사유·시기 및 통지예외 사유 등이 각 수사기관의 현행 법령상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기관별 실제 운영 현황 및 실무여건 등 관련 의견을 고려하여 통일적 기준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특히, 통지사유 및 통지주기 등이 현행 규칙·지침에 비하여 일정 부분 강화되는 측면도 있는바,⁵⁾ 이로 인하여 일선 수사기관에서 실무상 어려움 등이 가중될 우려는 없는지도 함께 논의해볼 필요가 있겠음.

5) 예를 들어, 검찰 수사단계의 경우 현행 지침은 사건 접수 후 3개월 내에 처리되지 않는 등의 경우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사건 접수 후 매 1개월 경과 시마다 통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른 수사 진행상황 중간통지 규정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통지대상	-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통지 사유·시기	- (통지시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 ① 사건을 접수하거나 사건을 타 기관으로 이송하였을 때 ② 사건 접수 후 매 1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③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을 때 ④ 검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 거나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때 가.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거나 타 기관에서 이송받은 사건을 접수한 날 나.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 또는 재항고 이후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수사가 재개된 날 ⑤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재수사를 요청한 때
통지예외 사유	① 통지대상자가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 ② 고소 또는 고발이 취소된 경우 ③ 수사 또는 재판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④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침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발생할 우 려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등에 대한 공판 관련 통지 강화(안 제259조의2)

개정안은 피해자 등의 ‘신청이 없더라도’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u>당해</u>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① ----- ----- ----- ----- <u>에게 해당</u> ----- ----- ----- -----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검사가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함.

이는 형사공판의 진행 및 그 결과 등을 고소인 등 범죄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 신설된 규정으로, 실무상 대검찰청의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시행되던 기존 제도를 법제화한 것임.⁶⁾ 피해자로서는 사건에 대한 정보제공을 충분히 받아야만 제대로 된 형사절차 참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사건에 대하여 통지받을 권리는 절차 참여의 전제조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인격권의 보호 및 효율적 방어권 행사에 효과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음.⁷⁾

다만, 현행법은 피해자 등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제한적 의무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개정안은 피해자 등 ‘신청이 없더라도’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 등의 정보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입법취지가 인정된다고 봄.

특히, 대검찰청은 2025년 5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⁸⁾을 개정하여 사건접수배당, 사건결정결과,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

6) 김휘옥·박일환, 「주석 형사소송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17. 11., p.619.

7) 박광섭, “개정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정의 평가와 향후 입법과제”, 법조 제57권 제3호, 법조협회, 2008, p.97.

8)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4조(형사절차 정보제공) ① 검사 또는 수사관은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에게 가해자(피해를 가한 피의자·피고인에 한한다)에 대한 사건접수배당, 사건결정결과,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집행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가해자의 구속·석방 등 신병에 관한 상황, 출소 등 형집행상황에 관한 정보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공한다.

②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가 제1항의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거나 정보제공으로 인해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신청 또는 제2항의 정보제공 불원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별지 제15호 ‘형사절차 정보제공 신청(불원)서’를 작성하여 민원실 또는 피해자지원실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구두

결과,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 형사절차 정보를 범죄피해자 등의 ‘신청이 없더라도’ 제공하도록 통지제도를 강화하였는데,⁹⁾ 개정안은 이를 법률로 명문화함으로써 피해자 등의 신청이 없이도 정보를 신속하게 통지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도 타당한 입법조치로 볼 수 있음.

다만, 현행법이 피해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가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2차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 볼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신청을 전제로 하지 않는 통지의무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4조 제2항처럼 피해자 등이 정보제공을 원하지 않거나 기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규정을 함께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한편, 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통지 등은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¹⁰⁾ 및 동 시행령¹¹⁾에도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

· 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범죄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제공에 대한 신청(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9) 머니투데이, “검찰, 범죄 피해자에 ‘사건 처리상황 자동 통지’ 시행…알 권리 강화”, 2025. 4. 7.

10)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①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① 국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이들 규정과의 관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필요하다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봄.

-
1. 범죄피해자의 해당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
 2.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 현황 등 범죄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법 제8조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이하 “형사절차 관련 정보”라 한다)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사 관련 사항: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등 결과
2. 공판진행 사항: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主文),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3. 형 집행 상황: 가석방·석방·이송·사망 및 도주 등
4. 보호관찰 집행 상황: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의 개시일 및 종료일, 보호관찰의 정지일 및 정지 해제일 등

② 형사절차 관련 정보는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도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요청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으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형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서면, 구두, 팩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3. 피해자 변호사 제도 도입(안 제259조의3 신설)

개정안은 범죄피해자 등의 변호사 선임권을 보장하고(제1항), 피해자의 변호사도 수사기관 조사에 대한 참여 및 의견진술권(제2항),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서의 출석 및 의견진술권(제3항),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의 열람·등사권(제4항) 및 포괄적 대리권(제5항)을 갖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6항).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59조의3(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변호사 선임) 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u>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u> <u>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u> <u>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u> <u>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u>
--	---

현행법상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및 국선변호사 선정 제도는 성폭력 범죄¹²⁾ 등 특정범죄¹³⁾에 관하여서만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 13) 성폭력 범죄 외에도 아동학대 범죄, 스토킹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인신매매 등 범죄, 장애인 학대 범죄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최근(2025. 12. 2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이를 모든 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확대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한 법적 조력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사건의 중요 관계인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참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5년 5월 법무부장관에게 범죄피해자의 보호 공백을 메우고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및 피해자 변호사의 권한·지위에 관한 사항을 「형사소송법」에 일반 규정으로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음.¹⁴⁾

다만, 개정안과 같이 ‘모든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 변호사의 수사·재판 참여권 등을 일률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모든 범죄에 대하여 확대하는 안 제6항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에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 관련 규정이 신설되어 2026. 6. 24. 시행을 앞두고 있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230호, 2026. 6. 24. 시행 예정) 제8조의2(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받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변호사(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라 한다)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⑤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 미만인 피해자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14)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변호사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 2025. 6. 26.

헌법 제12조제4항15)은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및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임권을 명시하고 있고, 그에 따라 현행법 제201조의 216)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직권선정을, 현행법 제33조17)는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을 규정하고 있음.

15) **헌법 제12조**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16)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①제200조의2·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판사는 제1항의 경우에는 즉시, 제2항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④검사와 변호인은 제3항에 따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판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문하는 때에는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심문의 요지 등을 조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⑨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⑩제71조, 제71조의2, 제75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1항·제3항·제4항, 제86조, 제87조제1항,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 및 제200조의5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하는 경우에 준용하고, 제48조, 제51조, 제53조, 제56조의2 및 제276조의2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의 경우에 준용한다.

17)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직권선정은 그 피의자가 구속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범죄혐의 등이 중대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 또한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미성년자 또는 70세 이상인 경우, 심신장애 등이 있는 경우, 기소된 사건의 법정형이 중한 경우 등으로 그 요건이 한정되어 있음.

이처럼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상 명시적 규정이 있음에도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일정한 요건과 제한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헌법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을 개정안과 같이 모든 범죄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 등 측면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봄.

다음으로 안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등의 진술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294조의2¹⁸⁾는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에 대해서도 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개정안에 따라 피해자 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18)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이들 유족에 대해서도 변호사 선임권 등을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다음으로 안 제3항의 경우, 안 제2항이 수사기관의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피해자 변호사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피해자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제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피의자심문 등 형사절차 전반에 있어 피해자 변호사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수사기밀 유출이나 절차 지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가 대규모인 사건 등과 같이 현실적으로 피해자 변호사의 출석이나 의견진술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변호사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는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6조¹⁹⁾ 등을 참고하여, 피해자 변호사의 형사절차 출석 및 의

19)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6조(의견의 진술) ① 법원은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변호사로부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 진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판기일에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신청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이후 또는 제출과 함께 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의 순서와 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대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변호사에게 질문할 수 있고, 설명을 촉구할 수 있다.

⑤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제4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견진술 권한에 대한 일정한 제한 사유 및 재판장 승인 절차 등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다음으로, 안 제4항은 피해자 변호사가 증거보전 후 또는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나, 이미 현행법 제294조의4²⁰⁾에 따르면 피해자 변호사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현행법 제294조의5²¹⁾에 따라 공소제기 후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⑥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피해자 변호사가 의견을 진술한 후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 변호사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⑦ 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이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의견진술 또는 질문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견진술과 질문이 해당사건과 관계없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로서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구속 전 피의자신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의 절차에 준용한다.

20)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심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에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재판장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나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21) 「형사소송법」 제294조의5(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등사) ①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있을 뿐 아니라, 제185조²²⁾에 따라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도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는바, 이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안 제4항을 추가 신설하는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다음, 안 제5항은 피해자 변호사에게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그 법정 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하여 포괄적인 대리권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현재 성폭력 범죄 등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변호사의 포괄적 대리권에 심리 비공개 신청권,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권, 배상명령 신청권 등이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있음.²³⁾

다만,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해자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제26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물건(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열람 또는 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제294조의2에 따른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재판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검사가 제2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서류등의 사용목적에 제한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할 때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2) 「형사소송법」 제185조(서류의 열람 등)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제184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②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제184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294조의4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송기록”은 각각 “제184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로, “재판장”은 각각 “판사”로, “심리의 상황”은 “수사 및 재판의 상황”으로 본다.

23) 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 업무 매뉴얼」, 2014. 3.

변호사가 포괄적 대리권을 근거로 대리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²⁴⁾의 입장이나, 친고죄에 있어 피해자의 ‘고소’는 피해자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는 행위인지 불명확하다는 의견도 있는바,²⁵⁾ 개정안과 같이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기보다는 피해자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는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끝으로 조문의 위치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피해자 변호사 관련 규정을 “제2편 제1심”의 “제2장 공소” 내에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다음으로 신설하려는 것이나, 개정안의 내용이 ‘수사’ 단계를 포함하여 형사절차 전반에 있어 적용되는 변호사 조력권을 규정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를 “제1편 총칙”의 “제4장 변호” 내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문 의 처
02)6788-5048

24)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0678 판결

25) 조미선, “피해자의 정의 및 피해자 변호사 역할에 관한 소고”, 인권과정의, 2021. 8.